정기/중간 검사 시 준비사항

▣ 홍등(어업등) - 선등 검정증서 제출해야함

☞ **적용대상** : 모든 어선 (야간항해 하지 않는 전장 20미터 미만 어선 면제)

☞ **설치방법** : 기존 선등의 상부(꼭대기)에 설치, 스위치는 별도로 설치

해당법규 :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 [별표4]



설치된 홍등



설치된 기관실 자동소화기

▣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 - 소화기 검정증서 제출해야함

☞ **적용대상** :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 (선외기 제외)

☞ **설치방법** : 기관실 상부 측에서 엔진을 향하도록 설치 (구입박스 내 설명서 참조)

해당법규 : 어선설비기준 349조[별표33]

▣ 무선설비(VHF/DSC) - VHF/DSC 등록된 **무선국허가증** 비치해야함

☞ **적용대상** : 총톤수 2톤 이상에서 5톤 미만의 미설치 어선

- 상부구조물이 없는 어선, 무동력어선은 면제
- 어장관리선 면제 => 낚시어선업(유어선) 할 경우 설치해야 함

☞ **적용시기** : 이미 설치확인 임시검사가 지정된 경우 - 늦어도 그 기한까지

- 도래하는 정기/중간 검사 시 설치 또는 불가 시 임시검사로 유예하여

1) 3~5톤 어선은 늦어도 2019.06.30.까지

2) 2~3톤 어선은 정기/중간 검사 후 1년 이내 (늦어도 2020.06.30.까지)

☞ **설치방법** : 무선면허 취득 후 무선설비업체 통해 설치, 위치(위도/경도) 표시되어야함.

해당법규 :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2조



▣ 선박용 소화기 (휴대식 또는 간이식 타입, 육상용 소화기 비치불가)

☞ **적용대상** :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 및 10톤 이상 어선

☞ **비치수량 예** : 1) 5톤 이상 낚시어선 : 휴대식(5kg 이상) 소화기 2대

2) 10~20톤 어선 : 휴대식(5kg 이상) 소화기 2대

3) 20톤 이상 유자망 : 휴대식(5kg 이상) 소화기 4대

4) 20톤 이상 연승 : 휴대식(5kg 이상) 소화기 6대

※ 간이식 비치할 경우 개수는 휴대식의 2배

☞ 소화기 검정증서 제출해야함

☞ 인터넷(온라인)으로도 구매가능 => 구글(google.com) 홈페이지에서 "마린마트" 입력 =>마린마트 홈페이지(marinemart.kr) 접속

해당법규 :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59조/
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6조 [별표4] / 어선설비기준 103조/104조



휴대식



간이식





▣ 엘피지(LPG)가스 배관 : 비닐호스에서 금속 플렉시블 호스로 교체

☞ **적용대상** : 엘피지 가스통 사용어선 (소형 일체형 LPG가스 사용어선은 제외)

☞ **적용장소** : 가스통부터 중간밸브까지

(중간밸브에서 연소기 까지는 기존 비닐호스 사용가능)

☞ 교체하지 않을 경우 가스통/호스 철거해야 함.

☞ 인터넷으로도 구매가능 (길이 1m, 3m 판매) => 구글(google.com) 홈페이지에서 "지코스몰" 입력->지코스몰 홈페이지(gcossmall.co.kr) 접속

☞ 가능하면 가스(전문) 업체 통해서 구매 · 설치

해당법규 : 어선설비기준 139조

관련사항 문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또는 검사담당 검사원으로 문의바랍니다

☎ 721-7401, 7402